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~~	
람	



제620호 2024. 2. 13.(화)

입 법 예 고

고 시

(
호					
· 라					
=					

발행: 고성군, 편집: 인구청년추진단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4-3호

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|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13.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*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, 자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이 필요함.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

*국가연령별 표준화 자살률 23.6명, OECD 평균 11.1명의 2배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- 2) 성명(법인 및 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
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-3 건강증진과
- 2) 전화: (055)670-4022, 팩스: (055)670-4059
-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- 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 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 [전화: (055)670-4022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살"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자살시도자" 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.
- 3. "자살위험자" 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자살예방"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자살예방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- 2. 시행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
- 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·홍보
- 4.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
- 5.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치료·지원 및 사후관리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군수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센터(이하 "자살예방센터" 라 한다)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3호에 따른 「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」에 둘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
법률 시행령」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)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·상담·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,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○ 성명(단체명): ○ 주 소: ○ 전화번호:
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정안	찬반의견		ᄼᅯᇲ	수정사유	
세정인	찬성	반대	수정안	T 78 71 TT	

고성군 고시 제2024-24호

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2. 7. 고 성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		
(별지참조)							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	도로명주소	변경사유				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	효력발생일					
(별지참조)							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	폐지사유
	(별지참조)	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 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

연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삼산면 장치리 594	삼산면 자란만로 2129	2024.02.07.	건물번호부여신청	하이면 ~ 삼산면 해안에 걸쳐진 자란만(해안이름)의 이름을 활용하여 부여	
2	동해면 내산리 산123-32	동해면 내산1길 68-33	2024.02.07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동해면 내산리)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	

고성군 고시 제2024-26호

2024년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부1 지구, 배둔1지구, 배둔3지구, 배둔6지구, 배둔7지구, 배둔8지구, 배둔9지구, 배둔1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> 2024. 2. 8. 고 성 군 수

1. 책임수행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

2. 고시내용

지구명칭	사업위치	필지수	면적(m²)
총 계	9개 지구	1,114	347,557
영부1지구	영현 영부 333번지 일원	296	112,775
배둔1지구	회화 배둔 149번지 일원	97	59,190
배둔3지구	회화 배둔 341-2번지 일원	164	26,396
배둔6지구	회화 배둔 434-3번지 일원	98	18,896
배둔7지구	회화 배둔 442-7번지 일원	97	14,357
배둔8지구	회화 배둔 809-1번지 일원	105	37,962
배둔9지구	회화 배둔 438-2번지 일원	114	23,737
배둔10지구	회화 배둔 468-2번지 일원	143	54,244

3. 위탁 업무 :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

4. 기타